

2005년도  
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청요강

2005. 10

한국학술진흥재단

## 개 선 사 항

구 분	2004	2005	비 고
1.사업예산	320억	330억	10억 증액
2.지원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정된 연구인력 인프라 구축으로 거점 연구센터 유도</li> <li>○ 이공계 대학연구소의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 육성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일부사항 추가 및 변경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소 중심의 지원</li> <li>- 대학별 신청 연구소 수 제한</li> <li>- '99선정 중점 연구소 중 엄정한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일부 연구소에 한하여 재진입 허용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과제중심에서 연구소중심 지원으로 전환</li> <li>- 전문화/ 특성화 유도</li> <li>- 기 축적된 연구역량의 단절 방지 및 성과의 심화와 확대 도모</li> </ul>
3.지원개요			
- 지원분야	○ 이공계 분야	○ 전 학문분야	
- 지원규모	○ 이공계 대학연구소 (이공계) - 연간 5억-10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문사회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간 2억 3천만원 이내</li> </ul> </li> <li>○ 이공계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간 5억원(최대 7억원) 이내</li> </ul> </li> <li>○ 정부지정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간 3억원 이내</li> </ul> </li> </ul>	- (이공계 분야) 5억원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최대 7억원 신청 가능
- 지원기간	○ 이공계 대학연구소(이공계) - 2단계 5년 : 2+3	○ 인문사회 및 이공계 분야 - 3단계 9년 : 3+3+3 ※ 1단계 1년차 종료시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 후 지속지원 여부 결정	- 장기 집중지원 실시 - 연구관리 강화, 부실화 방지
- 연구팀 구성 및 운영	○ (내용 없음)	○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- 연구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를 구성하고, - 연구소 운영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 기능 수행	- 연구소장 중심 운영체제 구축
4.심사/선정			
- 심사항목	○ 총 6개 항목 100점	○ 총 5개 항목 100점	- 지원방향(연구소 중심)과 일관된 심사항목 설정(재편성)
5.연구비관리			
- 연구비 사용	○ (내용 없음)	○ 연구소 전체의 항목별 결정연구비 총액 범위내에서 과제단위가 아닌 연구소 단위로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	- 연구소(장) 자율권 확대
6.사후관리			
- 평가방법	○ 중간평가(연차) - 중간보고서 평가	○ 연차별 점검(연차) - 연차보고서 점검 ※ 단, '05 선정 연구소 1단계 1년차 점검시 정밀평가 실시	

※ 2005년도 재단 공통 개선사항(사사표기, 보조원 수당 등)은 기술 생략

# 차 례

<b>I.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</b> .....	<b>1</b>
1. 사업목적 .....	1
2. 지원방향 .....	1
<b>II. 지원개요</b> .....	<b>1</b>
1. 지원분야 및 대상 .....	1
2. 지원예산 .....	2
3. 지원규모 및 기간 .....	2
<b>III. 신청</b> .....	<b>3</b>
1. 신청자격 및 요건 .....	3
2. 신청기간 .....	9
3. 신청방법 .....	10
4. 신청절차 .....	10
5. '99 선정 연구소의 신규신청 .....	13
<b>IV. 심사 및 선정</b> .....	<b>14</b>
1. 심사절차 .....	14
2. 심사방법 및 내용 .....	14
<b>V. 연구비 지급 및 관리</b> .....	<b>16</b>
1. 지급방법 .....	16
2. 지급시기 .....	17
3. 연구비 사용 .....	17
4. 연구비 관리 .....	17
<b>VI. 보고서 제출 및 평가</b> .....	<b>17</b>
1. 연차(단계)보고서 제출 및 점검(평가) .....	17
2.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.....	19
<b>VII. 간접연구비 지원</b> .....	<b>22</b>
1. 지원대상 .....	22
2. 지원기준 .....	22
3. 지원비율 .....	22
4. 지원시기 .....	22
<b>VIII. 기타사항</b> .....	<b>22</b>
※ 불임 1 : 2005년 대학중점연구소 중 정부지정 지원계획	24
불임 2 : 2005년 연구비 산정·집행기준표	27
불임 3 : 2005년 중점연구소 총괄 신청서 양식	29
불임 4 : 2005년 중점연구소 세부과제 연구계획서 양식	42
불임 5 : 1999년 선정 연구소 연구성과보고서 양식	46

# I. 사업목적 및 방향

## 1. 사업목적

- 대학연구소의 연구 인프라 지원강화를 통한 대학의 연구거점 구축
- 대학의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소 중심의 젊은 연구자 양성 촉진
- 대학연구소의 특성화·전문화 유도를 통한 연구소 연구역량의 국제화 도모
- 대학연구소의 심층적 연구성과를 활용한 대학의 교육기능 보완 및 심화

## 2. 지원방향

- 연구소 전임연구인력 T/O 의 안정적 지원으로 대학 연구소의 활성화
- 대학별, 지역별 특성화 전략 확보 및 다학문간, 학제적 연구소 지원 강화
- 연구소의 연구와 교육 기능 및 역할 제고
- 연구소장 중심의 자율 책임경영(권) 강화 및 연구소 예산운영 유연성 확대
  - ※ 과제수행 중 연구소장의 결격사유가 생기는 경우 대학은 연구소장을 변경 가능함
- 대학별 신규 신청이 가능한 연구소 수를 인문사회 및 이공계 분야 각 1개 (총 2개 연구소)이하로 제한
- '99 선정 중점연구소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따른 재진입 허용

# II. 지원 개요

## 1. 지원분야 및 대상

### 가. 지원분야

- 인문사회 및 이공계 전 분야(예술체육학 분야 및 다학문간, 학제적 연구 포함)
- 정부지정 분야 : 별첨계획 참조

## 나. 지원대상

- 대학에서 구체적인 육성 방안이 수립된 연구소
  - 대학에서 연구소 전임연구인력 확보(계획포함)하고 있는 연구소
  - 대학에서 독립된 전용공간과 연구공간 지원(예정포함)하고 있는 연구소
- ※ 대학은 해당 연구소의 육성을 위하여 대응투자, 연구시설, 인력 지원 등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-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‘연구주제 지정공모’에 응모하는 연구소(필요시 대학관련기관(출연연, 협회)도 포함)
  - 중점연구소의 지정주제에 대한 세부요건은 [붙임 1] 참조

## 2. 지원예산: 33,000,000천원

- 지원연구비 : 32,010,000천원
  - 신규과제 지원액 : 8,445,185천원
    - 인문사회 분야 : 10개 연구소 내외
    - 이공계 분야 : 7개 연구소 내외
    - 정부지정 분야 : 3개 연구소
  - ※ 신청내용이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예산이 남더라도 선정을 안할 수 있음
  - 계속과제 지원액 : 23,564,815천원
    - 인문사회 분야 : 21개 연구소
    - 이공계 분야 : 46개 연구소
  - ※ 계속과제 평가결과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규과제 지원 등 신축적 운용
  - ※ 간접연구비 포함
- 심사평가운영비 : 990,000천원(총 예산 3%)

### 3. 지원규모 및 기간

#### 가. 분야별 지원규모 및 기간

구 분	지원규모	지원기간
인문사회 분야	- 연간 2억 3천만원 이내	- 3단계 9년(3+3+3)
이공계 분야	- 연간 5억원 이내	

※ 단계별 신청 및 단계(연차)평가를 통한 지원 실시

※ 이공계 분야의 경우 5억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연구에 필수적인 고가 기자재 구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억원 이내 별도 신청 가능

- 별도 신청대상 기자재 등은 품목당 5,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함 (5,000만원 미만의 기자재 등은 특수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)

※ 정부지정 분야의 경우 별첨 계획의 지원규모 참조

## III. 신청

### 1. 신청자격 및 요건

※ 대학별 신규 신청은 인문사회 분야 및 이공계 분야 각 1개(총 2개) 연구소로 제한함 (단, '99 선정 중점연구소의 재진입 및 정부지정 분야의 신청은 동 신청제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)

#### 가. 신청 자격 및 요건

##### 1) 참여인력 자격 요건

○ 학술진흥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

- 연구참여자(연구소 전임인력 제외)는 2000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, A& HCI급·SSCI급·SCI급(SCI 및 SCIE 등) 등의 국제학술지게재논문, 등록 완료된 외국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)등의 연구 실적이 2편(이공계는 3편) 이상 이어야 함

※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,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

※ 단, 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또는 A&HCI급·SSCI급·SCI급(SCI 및 SCIE등)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연구지원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

○ 참여신분별 참여자격

구 분			참여자격
연구팀장 (세부과제 연구책임자)			- 인문사회 : 연구업적 2편 이상 - 이공계 : 연구업적 3편 이상
공동 연구원	일반공동연구원		- 인문사회 : 연구업적 2편 이상 - 이공계 : 연구업적 3편 이상
	연구소 전임 인력	전임연구교수 (이공계 분야)	- 연구업적 2편 이상
		전임연구원	- 박사학위 소지자

※ 연구소 전임인력은 신청 연구소에 상근하며,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연구자에 한함(반드시 대학총장의 채용발령)

- 연구소 전임인력은 신청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에 출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되,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이 허락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

※ 연구보조원은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일정기간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, 협약 당시 자격 기준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될 수 있음(연구기간 중 신분변동시에도 보조원 인정 가능)

- 연구보조원 자격 : (전문)학사·석사·박사과정생

‘06년도 사업부터 신청자격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, 세부사업별 구체적 기준은 ‘05년 말에 공고할 예정임

2) 연구소 공간, 전임 인력 인건비, 대응투자 요건

구 분	기 준	비 고
시설(공간)	- 연구소 전용공간 : 15평 이상 - 전임연구교수 : 1인당 2평이상 - 전임연구원 : 1인당 1.5평 이상	
전임연구교수 (이공계분야에 한함)	- 연 3000만원 이상 지급	제 복리후생비 별도
전임연구원	- 연 2,400만원 이상 지급	제 복리후생비 별도
대응투자	- 지원 연구비의 15% 이상 확보	

※ 이공계 분야의 경우 별도 지원규모(5억원 외 2억원 이내)는 대응투자 대상에서 제외함

### 3) 연구팀 구성 및 조건

#### 가) 인문사회 분야

- 연구소 총괄과제별 2개 이상 연구팀(세부과제)으로 구성하고, 각 연구팀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연구진으로 구성하여야 함

구 성		자 격	비 고
총괄책임자		- 연구소장	세부과제 책임자를 겸임가능
연구팀장 (세부과제 책임자)		- 가.-1) 항의 연구업적	
공동 연구원	일반	- 가.-1) 항의 연구업적	- 총 3명 이상 - 연구소 전임연구원이 세부책임자일 경우 공동연구원 3명 중 연구소 전 임인력 1명 이상
	전임 연구원	- 박사학위 소지자(2명 이상)	
연구보조원		(전문)학사·석사·박사과정생	- 3명 이상

- ※ 연구소장은 총괄책임자가 되어 연구소 기반조성, 인력육성 및 연구과제 진행을 관리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할 수(1과제에 한함) 있음
  - 연구소장은 임기제로 선임하며 (연임 가능), 임기중에는 책임과 권한이 확실하도록 함

- ※ 연구팀장(세부과제 책임자) : 해당 대학교원 또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인력

- ※ 일반 공동연구원 : 대학교원 또는 박사급 연구원

#### 나) 이공계 분야

- 연구소 총괄과제별 2개 이상 연구팀으로 구성하고, 각 연구팀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연구진으로 구성하여야 함



구 성		자 격	비 고
총괄책임자		- 연구소장	세부과제 책임자를 겸임가능
연구팀장 (세부과제 책임자)		- 가.-1) 항의 연구업적	
공동 연구원	일반	- 가.-1) 항의 연구업적	- 총 4명 이상 - 연구소 전임연구교수(원)가 세부책임자일 경우 공동연구원 4명 중 전임연구인력 2명 이상
	전임 연구교수	- 가.-1)항의연구업적 (1명 이상)	
	전임 연구원	- 박사학위 소지자 (2명 이상)	
연구보조원		-(전문)학사·석사·박사 과정생	- 4명 이상

※ 연구소장은 총괄책임자가 되어 연구소 기반조성, 인력육성 및 연구과제 진행을 관리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할 수(1과제에 한함) 있음

- 연구소장은 임기제로 선임하며 (연임 가능), 임기중에는 책임과 권한이 확실하도록 함

※ 연구팀장(세부과제 책임자) : 해당 대학교원 또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인력

※ 일반 공동연구원 : 대학교원 또는 박사급 연구원

#### 다) 공통사항(인문사회 및 이공계 분야 공통)

○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중점연구소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

- 운영위 구성 : 연구소장, 연구팀장, 공동연구원 일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연구소장이 구성함

- 운영위 기능 :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(선정 후 연구소 실행예산 편성, 연구계획 변경 등)

※ 연구소에 기존 운영위원회가 있는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운영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

※ 지정공모되는 중점연구소는 운영위원회 구성시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함

- 연구소(총괄과제)당 1인 이상의 행정요원을 배치하여 연구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함
- 연구소 지원 신청시 연구소장, 연구팀장, 일반 공동연구원은 확정된 상태이어야 하며, 전임연구교수, 전임연구원 등은 지원대상 연구소 선정 이후 확보 가능
- 연구소 전임인력 중 타 대학 박사학위 출신자가 25% 이상 이어야 함
- 전임연구인력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

## 나. 연구비 신청제한

### 1) 연구소
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연구소 과제의 당초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소
-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간평가(연차점검 및 단계평가)결과 탈락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소가 소속된 대학의 부설연구소
- '00 ~ '04년도 재단 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, 지원된 연구소

### 2) 연구진
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
-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
-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(단,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)
- 재단의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,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강의과견, 그리고 과학기술부 이관사업의 해외 Post-Doc.지원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(지원기간)이 중복되는 자

#### 다. 연구 참여 제한

- 본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내에서는 세부과제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
  - 세부과제 책임자(연구팀장)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 신청한 것이며, 총괄과제책임자(연구소장)는 세부과제책임자를 겸직한 경우에만 연구책임자로 1과제 신청한 것으로 봄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년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,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
  -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및 재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
  -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5. 12. 31 이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

-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. 1. 1 이후인 과제라도 과학기술부 이관사업 중 선도과학자육성지원연구, 우수여성과학자도약지원연구,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, 유망여성과학자경쟁력강화지원연구지원사업의 계속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
  -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. 1. 1 이후인 선도기초과학연구실(ABRL)지원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 수행하는 것으로 함 (기타 참여연구원의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산입하지 않음)
- ※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(BK)21사업 참여자(지역대학육성분야사업 제외)는 재단 연구지원사업에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
- ※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에서 각각 수행중인 우수연구센터(ERC, SRC) 및 지역협력연구센터(RRC) 등 정부지원형 연구센터 연구참여자(센터소장)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
## 2. 신청 기간

### 가. 총괄 및 세부과제별 연구계획서 제출

- 2005. 10. 21 (금) ~ 10. 27 (목) 18:00 까지

### 나. 성과보고서 제출

- 대상 : '99 선정연구소 중 금년도 신청을 희망하는 연구소
- 제출자료 및 방법 : 아래 자료를 소속기관 연구관리부서 경유 제출
  - 성과보고서([붙임 5] 양식 참조) 1부 및 단계별 대표업적물(논문, 저서 등) 총 5건 각 1부
- 기간 : '05. 11. 8 (화) 18:00 까지(대표업적물은 우편도착분에 한함)

### 3. 신청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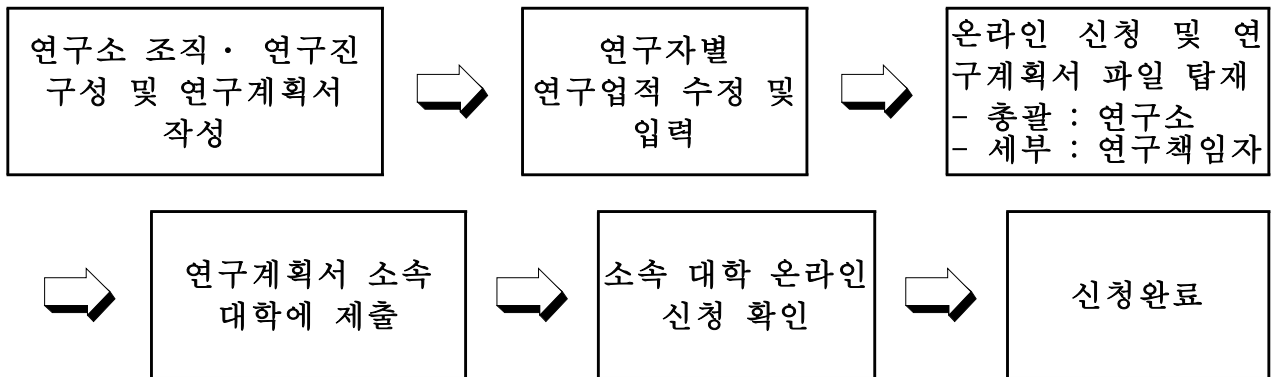
○ 연구소별 및 연구책임자별로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함

※ 연구소 접속 및 신청

- 연구소 단위로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(접속방법 추후 안내)에 접속하여, 연구참여자(세부과제별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, 연구보조원 등) 정보 및 총괄신청서 탑재

※ 세부과제별 연구책임자 접속 및 신청

- 방법 1. 재단 홈페이지 ⇒ 현재 신청중인 사업 ⇒ ‘신청’ 클릭 진행
- 방법 2. 재단 홈페이지 ⇒ 연구책임자 로그인 ⇒ 연구지원 Menu ⇒ 연구지원 신청 ⇒ 해당사업 클릭 진행
- 세부과제별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탑재



### 4. 신청 절차

#### 가. 온라인 신청 전

- 연구소 정보 입력 : 총괄책임자(연구소장)은 온라인 신청전 재단 「대학부설연구소정보」에 해당 연구소의 정보를 입력 또는 수정을 하여야 함
- 참여 연구자 정보 입력 : 신청연구소 소속 연구자는 온라인 신청전 재단 홈페이지 「학술연구자등록」에서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한

뒤 이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

- 연구계획 수립시 연구기기 구입이 필요 할 경우 사전에 연구비 중앙 관리부서에서 동일 또는 동종 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여야 함

#### 나. 온라인 신청

- 총괄계획서 및 세부과제별 연구계획서 : 온라인 신청시 한글 또는 MS 워드로 작성한 총괄 및 세부 연구계획서 온라인 탑재
  -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나 신청기간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입력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람
  -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과제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
- ※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원활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사전에 입력바람

#### 다. 온라인 신청 후

- 총괄 및 세부과제별 연구책임자
  - 입력내용(총괄 및 세부과제 연구계획서 포함)을 출력하여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
-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
  - 온라인 신청 확인 :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소속 연구자들의 온라인 신청여부를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하며, 확인이 안된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. 또한 신청과제의 연구계획서, 신청 현황 및 명단 등 보관
  - 확인 기간 : 2005. 10. 28 (금) 18:00까지

- 인건비를 신청한 박사급 연구전임인력에 한해서 4대 보험(건강, 고용, 산재, 국민연금)에 대한 기관부담금 신청은 연구비 중 인건비 항목에 산정하되 사전 연구책임자와 신청 기관장과의 협의 후 입력하여야 하며 최종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의 확인사항을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임

## ▣ 신청시 유의사항

### ○ 대학의 육성계획 및 연구소 활동 목표

- 중점연구소사업 신청시 소속대학의 연구소 육성계획과 연구소의 활동(연구 및 인력육성) 목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
- 동 사업 심사항목에 해당하며, 연차점검 및 단계별 평가에서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임

※ 붙임 총괄 신청서 양식 참조

### 대학의 연구소 지원계획을 포함한 발전계획

- 1) 연구소 현황 및 실적
- 2) 연구소 운영 및 발전계획
  - 연구소 내 대학원 과정 설치 및 운영 계획
  -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등을 포함
  - 연구소의 전문화/특성화 계획
- 3) 대학측의 지원 (인력, 대응투자, 시설 확충) 계획
  - 대응투자 계획
  - 연구소 전임연구원 확보 계획
  - 연구소 시설 및 공간 확보계획

### 연구소 활동 목표 (연차별 목표)

- 1) 인력양성 부문 : 중점연구소 사업 현재 연구소 소속의 전임연구인력의 확충 목표 및 그 방안
- 2) 교육과 연구의 연계 부문 : 중점연구소 내에 강좌 및 대학원학위 과정의 개설 목표, 교육과 연구의 연계 활동,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등
- 3) 연구성과 부문 : 과제 수행 중에 달성 가능한 참여인력의 연구성과 목표(전임 연구인력 및 연구소 비전임 연구인력(대학교원)으로 나누어 기술)
  - 기초 및 응용과학 분야 : SCI 급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수 및 논문 인용도 (Impact Factor 등)
  -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학 분야 : 국제적 수준·전국규모 학술지·게재 논문수 또는 학술저서 및 공인된 국제작품전 입상 등
  - 국제특허 등 기타 주요 관련지표
- 4) 기타 부문 : 그 외 연구소 활동의 성과 목표

## 5. '99 선정 연구소의 신규 신청(재진입)

가. 대 상 : 금년도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'99 선정 중점연구소 중 우수 성과 도출 연구소

### 나. 방 침

- 1) 당초 계획에 따라 6년의 연구기간 이후 지원종료(졸업)를 원칙으로 함
- 2) 단, 6년간 지원을 통해 구축된 연구기반 및 성과의 심화와 확대를 고려하고자,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한 일부 연구소('99 선정연구소 전체의 30% 내외)에 한하여, 재진입 기회를 부여함
- 3) 6년간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절차를 통해, 재진입 신청을 허용함

### 다. 절 차

- 1) 금년도에 종료하는 '99선정 중점연구소 중 재진입을 희망하는 연구소로부터 성과보고서를 접수



- 2) 성과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진입 신청대상 연구소 선별
- 3) 평가내용: 협약 성실히 이행 여부 및 당초 지원시 연구계획 대비 성과 등

## IV. 심사 및 선정

### 1. 심사절차

단계별	심사구분	심사내용	비고
1단계	요건심사	- 신청자격 여부	재단
2단계	전공심사	- 연구소실적 및 육성계획 - 인력양성등 수행목표의 적절성 - 연구과제 수행계획 - 연구수행능력 - 연구비 적절성 등	전공 및 면담심사단
3단계	면담심사	- 발표, 질의 및 토론	
4단계	종합심사	- 예산 배정 및 과제선정	재단 및 교육인적자원부

### 2. 심사방법 및 내용

#### 가. 제 1 단계 심사 (요건심사)

- 심사방법 :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및 심사
- 심사내용 :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저촉여부 등 검토

#### 나. 제 2 단계 심사 (전공심사)

- 심사방법 : 패널심사
  - 패널구성방법 : 재단의 심사자 Pool을 중심으로 세부 분야별 패널을 구성하며,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충원함
  - 패널별 심사위원 : 패널별 5~10인 내외
- ※ 심사자에게 공정한 심사의 책무 등을 서약받아 심사자의 책임성 고취

○ 심사내용 : 연구계획서 서면평가

- 연구소 실적 및 현황, 연구소 육성 및 운영 계획, 연구소 성과목표, 예산 집행 계획 등

○ 심사항목 및 배점

심사항목	심사내용	배점
연구소 실적 및 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문화/특성화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소 설립목적, 특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 실적, 연구 수행 성과(연구비 수주 포함), 특화분야 중장기 기획연구 수행실적 간의 연관성 등</li> </ul> </li> <li>• 연구참여자 현황 및 우수성 (연구팀장 및 참여연구원들의 연구능력)</li> <li>• 연구소 시설 및 연구장비(또는 연구문헌) 보유 현황</li> </ul>	30
연구소 육성 및 운영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소 운영, 발전계획의 적합성과 실현가능성</li> <li>• 연구소 전문화/특성화를 위한 계획</li> <li>• 연구소장의 행정·연구능력 및 연구소 발전에 대한 의지 (향후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)</li> <li>• 대학 측의 인력, 대응투자, 시설 확충계획</li> <li>• 대학차원의 지원 및 육성 계획</li> <li>• 산·학·연 협력 계획(공학계열 연구소인 경우)</li> </ul>	30
연구소 성과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육과 연구의 연계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과 연구의 연계목표는 적절히 설정되었으며 달성가능성이 높은가?</li> </ul> </li> <li>• 연구 성과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임연구인력/비전임인력(전임교원)의 연구 실적 목표는 적절히 설정되었으며 달성가능성이 높은가?</li> </ul> </li> <li>• 기타 성과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타 성과 목표는 적절히 설정되었으며 달성가능성이 높은가?</li> </ul> </li> </ul>	20
연구과제 수행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목적의 타당성</li> <li>• 연구주제의 창의성·구체성</li> <li>• 총괄주제와 연구팀 주제 간, 연구팀내의 세부주제 간 연계성</li> <li>• 연구내용, 방법의 적합성 및 논리성</li> <li>• 연구결과의 학문적·사회적 기여도</li> </ul>	15
예산집행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산 편성내용이 합리적이고 적절한가</li> </ul>	5
<b>계</b>		100

#### 다. 제 3 단계 심사 (면담심사)

- 심사대상 : 추후(기관별) 통보
- 심사방법 : 발표 및 질의응답
- 심사내용
  - 대학 당국 및 연구소 관계자의 연구소 육성 의지
  - 참여연구진들의 연구 의지
  - 연구소 실적 및 현황, 연구소 육성 및 운영 계획, 연구소 성과목표, 예산 집행 계획
  - 패널심사에서의 미확인 또는 의문 사항 확인 등
- 심사단 구성 : 2단계 심사참여자 및 재단이 지정하는 자

#### 라. 제 4 단계 심사 (종합심사)

- 심사내용
  - 전공심사 및 면담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
  - 예산배정 : 기본배정(10%), 당해연도 신청현황 80%(심사과제수 대비 40%, 심사조정금액 대비 40%), 학문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배정예산 10% 적용을 원칙으로 함
  - 선정기준 확정
  - ※ 필요한 경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현장실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기관이 지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

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.

### V. 연구비 지급 및 관리 (자세한 사항은 추후 협약서 및 관리 지침 참조)

1. 지급방법 :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 산학협력단장(소속 기관장)을 경유하여 지급

## 2. 지급시기

- 지원 연구소 선정 확정 후 1년 단위로 지급
- 1년 단위 연차별 점검 및 3년 단위 단계별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조정 연구비 지급

## 3. 연구비 사용 : 연구소 소속기관은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

- ※ 연구소의 세부과제별 연구비 조정결과에 따른 항목별 지원연구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연구소 단위의 실행예산 편성 및 운용

## 4. 연구비 관리

- 연구비는 반드시 총괄책임자가 소속된 관리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단,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
  -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
  -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  -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
  -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
  -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하였을 때
  -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(연구계획서 포함) 또는 협약서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

## VI. 보고서 제출 및 평가

### 1. 연차(단계)보고서 제출 및 점검(평가)

#### 가. 연차보고서(매년 제출)

- 1) 제출시기 : 연차별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
  - ※ 단계보고서 제출시에는 단계보고서로 대체함
- 2) 제출방법 : 온라인 제출

### 3) 제출자료

- 연구계획 대비 연구진행 상황
- 당초 협약사항 이행 현황 등

## 나. 단계 보고서

- 1) 제출시기 :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이전
- 2) 제출방법 : 온라인 제출
- 3) 제출자료
  - 단계 결과보고서 및 연구계획서 (재단소정 양식)
    - 현 단계 결과보고서
    - 다음 단계 연구비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

## 다. 연차별 점검 및 단계 평가

- 1) 점검 및 평가 시기 : 연차(단계)보고서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

- 2) 점검 및 평가 방법

### 가) 연차점검

- 주관 : 재단.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가 활용
  - 내용 : 전년도 연구계획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 평가를 중심으로 연차별 점검 방식
- ※ 1단계 1차년도 연차점검시 연구소 연구과제 운영 전반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지속지원 여부 결정 예정

### 나) 단계평가

- 제1단계 전공평가
  - 주관 : 당초 전공심사단 중 5명 내외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심사자로 활용
  - 내용 : 전단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단계 연구계획서 평가

- 제2단계 면담평가
  - 대상 : 전공평가시 면담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연구소
  - 주관 : 전공평가자 및 재단이 지정하는자
  - 내용 : 1단계 평가 내용에 대한 확인(전공평가결과 최종 확정)
- 제3단계 종합평가
  - 주관 : 재단
  - 내용 : 서면평가 및 면담평가 결과 검토
  - 결과 : 계속지원 여부 및 지원액 결정

다) 점검 및 평가 결과 : 차년도(다음단계) 지원연구비 조정 및 계속지원 여부 결정

※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간평가(연차점검 및 단계평가)결과 탈락된 연구소가 소속된 대학은 향후 2년간 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신청을 제한함

## 2.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

### 가. 결과보고서 제출(단계별)

1) 제출시기 :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

2) 제출방법 : 온라인 제출

3) 제출 자료

○ 온라인 입력

- 연구결과 개요보고서

-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 :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함

- 연구요약문(국·영문)

·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

※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, 음성자료,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

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.

○ 파일 탑재

- 연구결과보고서(자유형식, 원문파일 탑재)

4)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

-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‘결과보고서’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

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작성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

나. 연구결과 발표물(게재논문 또는 저서) 제출 (단계별)

1)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책무

- 연구결과는 세부과제(연구팀) 단위로 연차별 1편 이상 국내외 전문학술지(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(A&HCI급·SSCI급·SCI&SCIE급) 학술지)에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

2)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시기 :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

※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치 아니함

3)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

- 국문표기 : “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(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)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(KRF-2005-005-○○○○○).”
- 영문표기 : “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(MOEHRD,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) (KRF-2005-005-○○○○○).”

4) 연구결과 발표물 미제출자(게재논문 또는 저서)에 대한 관리

- 연구결과를 국내·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 미게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
  - 미게재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평가결과 D급과 동일 적용함
  - 미게재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는 재단의 소정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통과된 과제는 가능한 학술지에 게재를 권장하며 C, D등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을 일정기간(C급 3년, D급 5년) 제한함.
  - 당초 계획된 연구결과의 미도출로 논문게재가 불가능한 경우는 연구과정 및 결과를 제출받아 성실성과 적합성을 별도로 평가함

#### 다. 연구결과 사후 관리

- 연구결과논문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
  -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(Full-text service) 실시
  - 연구현황, 통계 등의 제공
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과 「기술이전촉진법」에 의해 국공립대학 소속 교수의 직무발명 관련 산업재산권은 ‘산학협력단’ 또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소유로 함
- 사립대학 소속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연구과제에 의해 취득한 산업재산권도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이 소유함
  - 연구책임자 등 연구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의 내규에 따라 처리함
-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자격 박탈



## 라. 연구성과 Follow-up 시스템

-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(논문, 저서, 보고서, 특허, 기술, 발명, 세제인명사전 등재, 언론보도, 인력양성 실적 등)을 게재하여야 함

## VII. 간접연구비 지원

### 1. 지원대상 : 선정과제 연구책임자의 소속대학(교)

### 2. 지원기준

- 2004년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지원

### 3. 지원비율

- A등급 기관 : 지원결정 연구비의 15% 지원
- B등급 기관 : 지원결정 연구비의 10% 지원
- C등급 기관 : 지원결정 연구비의 5% 지원
- 기타 기관 : 지원결정 연구비의 3% 지원

### 4. 지원시기 : 지원결정 연구비 지원시 일괄 지급

## VIII. 기타사항

-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에서 정한 연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분야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신청서의 부정확한 내용들은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선정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시 향후 연구비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인력양성지원사업과의 연계 : 중점연구소에서 연수 또는 근무하는(예정인) 연구자가 학술연구교수지원 또는 전문연구인력지원사업에 신청시 우대(가산점 부여 등)합니다.  
※ 상세한 연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별 계획 및 신청요강에 따름

## 문의처

(137-17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

- 사업 종합관리 관련문의 : 연구지원 1팀 Tel (02) 3460-5573~5 Fax (02) 3460-5580
- 온라인 신청(전산) 관련문의 : 학술정보담당관실 Tel (02) 3460-5544, 5542~6 Fax (02) 3460-5540
- 심사평가 관련문의 : 기초과학지원단 Tel (02) 3460-5562~9 Fax (02) 3460-5630  
인문사회지원단 Tel (02) 3460-5552~9 Fax (02) 3460-5630

(붙임 1)

# 2005년도 대학중점연구소 중 정부지정 지원계획

## I. 2005년도 중점연구소 중 독도 연구소 지원계획

### 1. 지원개요

가. 지원대상 :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대학관련 기관 (출연연, 협회 등)

※ 대학별 신청가능 연구소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

나. 지원규모 및 기간

○ 지원규모 : 연간 3억원

※ 지정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응자금투자에 대한 요구는 없음

○ 지원기간 : 3단계 9년 (3+3+3)

※ 매 단계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

다. 선정방법

○ 주제 공모후 경쟁을 통해 선정

- 발표·토론을 통한 선정평가로서 2, 3단계 심사절차를 통합하여 실시함

### 2. 연구요청 내용

○ 국제법 중 영토분쟁 관련 판례 연구

○ 고문서 중 독도관련 문헌 연구

○ 독도의 의미와 중요성(경제, 사회, 자원, 생태, 환경, 기상 등) 연구

○ 울릉도·독도의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의 연구

○ 기타 독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

### 3. 기타 요구사항

○ 지정된 연구소는 매년 1회 이상 관계기관 담당자(공무원, 연구원, 교수 등)을 초청하여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연구방향을 협의함

○ 지정된 연구소는 매년 1회 독도관련 학술행사를 개최함

☞ 위 사항 이외는 중점연구소(인문사회분야) 신청요강 내용에 따름

## Ⅱ. 2005년도 중점연구소 중 고등교육 연구소 지원계획

### 1. 지원개요

가. 지원대상 :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대학관련 기관 (출연연, 협회 등)

※ 대학별 신청가능 연구소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

### 나. 지원규모 및 기간

○ 지원규모 : 연간 3억원

※ 지정 연구소에 대해서 대응자금투자에 대한 요구는 없음

○ 지원기간 : 3단계 9년 (3+3+3)

※ 매 단계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

### 다. 선정방법

○ 주제공모후 경쟁을 통해 선정

- 발표·토론을 통한 선정평가로서 2, 3단계 심사절차를 통합하여 실시함

### 2. 연구요청 내용

- 대학평가에 관한 연구
- 대학회계에 관한 연구
- 대학 운영체제 및 행정합리화 연구
- 교원평가 및 지원에 관한 연구
- 선진국의 대학정책 연구
- 기타 고등교육 정책 연구

### 3.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 발표

※ 결과보고에 관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추후 별도 통지 예정

○ 정책보고서로써 평가에 요구되는 논문 발표 실적을 대신함

○ 또한, 매년 1회 이상 관계기관 담당자(공무원, 연구원, 교수 등)을 초청하여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연구방향을 협의함

☞ 위 사항 이외는 중점연구소(인문사회분야) 신청요강 내용에 따름

### Ⅲ. 2005년도 중점연구소 중 인적자원 연구소 지원계획

#### 1. 지원개요

가. 지원대상 :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대학관련 기관 (출연연, 협회 등)

※ 대학별 신청가능 연구소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

나. 지원규모 및 기간

○ 지원규모 : 연간 3억원

※ 지정 연구소에 대해서 대응자금투자에 대한 요구는 없음

○ 지원기간 : 3단계 9년 (3+3+3)

※ 매 단계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

다. 선정방법

○ 주제공모후 경쟁을 통해 선정

- 발표·토론을 통한 선정평가로서 2, 3단계 심사절차를 통합하여 실시함

#### 2. 연구요청 내용

- 교육투자 수익률 연구
- HRD와 R&D 연계 투자방안 연구
- 교육-고용-복지 연계방안 연구
- 학제 발전방안 연구
- 교육인적자원 국제동향 분석
- 교육인적자원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방안
- 성인의 기초 능력에 관한 연구
- 평생학습 수요 분석
- 기업의 평생 교육에 관한 연구
- 기타 인적자원 정책연구

#### 3.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 발표

※ 결과보고에 관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추후 별도 통지 예정

- 정책보고서로써 평가에 요구되는 논문 발표 실적을 대신함
- 또한, 매년 1회 이상 관계기관 담당자(공무원, 연구원, 교수 등)을 초청하여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연구방향을 협의함

☞ 위 사항 이외는 중점연구소(인문사회분야) 신청요강 내용에 따름

(붙임 2) 2005년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연구비 산정·집행기준표

항 목	내 용	산정·집행기준
① 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참여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보조원</li> <li>- 연구에 참여하는 (전문)학사·석사·박사과정생</li> <li>- 박사급연구원</li> <li>- 전임연구인력(전임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보조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전문)학사과정생 : 월 30만원 이내 / 1인당</li> <li>- 석사과정생 : 월 60만원 이내 / 1인당</li> <li>- 박사과정생 : 월 90만원 이내 / 1인당</li> </ul> </li> <li>○ 박사급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임연구교수(이공계): 연 3,000만원 이상/1인당</li> <li>- 전임연구원: 연 2,400만원 이상/1인당</li> <li>※ 4대 보험료 : 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의 9%를 기관부담금으로 적용</li> <li>※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자 및 기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자는 제외</li> <li>※ 계속과제의 경우 과제선정 당시의 수당기준에 따름</li> </ul> </li> </ul>
② 연구 활동 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부과제책임자(연구팀장)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300만원/1인당 이내</li> <li>*연구참여 수당을 신청한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없음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관리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괄책임자의 연구소 연구인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경비</li> </ul> </li> </ul>	-총괄책임자(연구소장) 관리운영비 연300만원 이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회의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소 총괄과제 운영 및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, 세미나 개최, 국내외 정보D/B 네트워크(DNS)사용료, 해외 기술정보 수집비, 평가회의비 등</li> </ul> </li> </ul>	-실제 소요액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및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내 여비는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출장일수, 인원,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</li> <li>-국외여비는 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자료수집 등 최소액 인정(왕복 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)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인물비(인쇄비, 수용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 수행에 관련된 인쇄, OHP 복사, 슬라이드 제작, 사진 현상,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</li> </ul> </li> </ul>	-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공요금 등 잡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우편,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보험금, 각종 수수료 등</li> </ul> </li> </ul>	-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
③ 직접성 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사연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(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포함)</li> </ul> </li> </ul>	-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문헌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(도서, 출판물 등)</li> </ul> </li> </ul>	-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료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내용년수 2년 이하인 시약, 기구, 소모성 재료,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</li> <li>-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비사용료(임차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(장비,기기)의 사용료, 분석료,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(컴퓨터 사용료)</li> </ul> </li> </ul>	-대내·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기기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년 이상의 내용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(전산장비, S/W포함)와 부수기자재(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품목,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</li> <li>-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</li> <li>-실제 소요액</li> <li>* 고가의 기기 구입비 포함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 (특허출원비의 경우 간접비에서 집행)</li> </ul>	-연구결과의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(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에 한함)

※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수당과 연구활동비 중 택일하여 신청할 것 (단, 본 사업이외의 재단 여타사업

- 의 과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선택하지 아니한 수당 혹은 연구활동비 중 하나를 계상할 수 있음)
- ※ 전임연구인력은 본 사업에서 연구활동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없으며, 다만 본 사업 이외의 재단 여타 사업의 과제에 참여시에는 본 사업에서 선택하지 아니한 연구활동비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음
  - ※ 총괄책임자 관리운영비는 연구소 세부과제 중 제1세부과제에서만 산정하여야 함
  - ※ 여비의 산정은 소속 기관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함
  - ※ 연구기기비 신청시에는 해당 기기의 연구기관 보유 현황 및 연구 종료 후 활용계획서 제출
  - ※ 연구비 신청시에 특정 세부항목(“연구참여 수당” 제외)이 전체 연구비의 70% 초과시는 사유서 제출

(붙임 3)

## 2005년도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총괄 신청서

연구소 정보				
연구소명	※ 대학명을 제외한 연구소명만 기재			
연구분야	대분류	※ 인문/어문/사회/예체능/자연/공학/의약학/농수해/복합학 중 택일	소분류	※ 재단 연구분야 분류표 참조
연구과제명	총괄과제명	국문 : 영문 :		
	세부과제명	제 ○ 세부과제		
		제 ○ 세부과제		
		:		
연구규모 (연구소 총괄) 연구규모	1단계 신청연구비		1차 년도	천원
			2차 년도	천원
			3차 년도	천원
	참여인원		총 참여인원 (연구보조원 제외)	명
			일반 공동연구원	명
			전임연구인력	명
			연구보조원	명
세부과제(연구팀) 수		총 과제		

**작성요령** ( → 신청서 작성시 동 작성요령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- 작성영역 : 연구소 총괄사항에 대하여 아래 영역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
  - 연구소 실적 및 현황
  - 연구소 중장기 발전 계획
  - 1단계 연구소 성과목표
  - 1단계 총괄 연구개요
- 분량 : 총 30매(상기 4가지 영역 전체포함) 이내
- 형식 : 제시된 항목별로 자유롭게 작성
- 규격 : 글자크기 12포인트, 줄간격 160%
- 참고사항 : 총괄 계획서는 온라인 신청 후 별도의 기관장 확인양식(추후 배포예정)에 동일 내용을 작성, 제출하여야 함



# 연구소 실적 및 현황

## I. 연구소 설립목적 및 연구실적

### 1. 연구소 설립 근거, 배경, 연도 및 목적

※ 학칙 또는 연구소 규정에 기술된 내용을 작성

### 2. 전문화/특성화를 위한 노력 및 실적

#### 가. 소속 대학의 전문화/특성화 방향

※ 기 확정된 내용을 작성

#### 나. 연구소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위한 노력 및 실적

※ 추진되었거나, 추진 중인 사안에 한하여 작성

### 3. 연구소 실적(기간 : 2002. 1. 1 - 2004. 12. 31)

☞ 연구소 전문화/특성화와 연계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하십시오

#### 가. 연구비 확보 및 연구과제 수행실적

##### ○ 실적 개요

구분	2002년도	2003년도	2004년도	계
건수	건	건	건	건
금액	천원	천원	천원	천원

※ 연구소명으로 계약되어 수행한 연구실적만 기재하십시오.(연구소 소속 교원 개인이 수행한 실적은 제외)

○ 실적 세부내역

(금액단위:천원)

번호	연구기간	연구과제 (지원사업명)	참여 인원수	지원연구비	연구비 지원기관명
1					
2					
3					

○ 대표 연구성과 및 활용도 기술

(위의 표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표 성과 10여개 이내 기술)

나. 학술회의 개최실적

(2002. 1. 1 - 2004. 12. 31사이에 연구소에서 주최/주관한 학술회의 실적)

○ 국내 학술회의(세미나 포함)

번호	개최기간	학술회의명	개최장소	발표자수
1				
2				
3				

○ 국제 학술회의

번호	개최기간	학술회의명	개최장소	발표자수		
				내국인	외국인	계
1						
2						
3						

다. 정기간행물/단행본 발간실적

(2002. 1. 1 - 2004. 12. 31사이에 연구소에서 발간한 실적)

학술지 / 학술서명	발간부수	발간년월일
	부	
	부	
	부	
	부	

※ ‘발행일자’에 정기 발행본은 발행주기 기재

## II. 연구소 현황

### 1. 연구인력 현황

- ※ 연구소 full-time으로 상근하는 연구인력(전임연구인력 등)에 한하여 작성
- ※ 학위취득 현황, 최근 연구수행실적, 고용조건(형태, 보수 등) 및 기타

### 2. 연구소 시설(공간) 및 연구장비 등 보유현황

- ※ 시설은 연구소의 위치, 별도 건물여부 등 상세히 작성

#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

## I. 연구활동 부문

※ 향후 3단계 9년간(또는 이후 포함)의 연구소 발전계획을 아래 항목에 맞추어 기술

### 1. 중장기 연구목표

\* 이하 단계별로 구분, 개략적으로 기술하십시오.

### 2. 중장기 연구계획 요약

\* 재단 지원과제와 연구소 고유의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기술하십시오.

- 중점연구소지원과제
- 연구소 자체 추진 연구과제

### 3. 기타사항

## II. 연구소 운영 부문

※ 향후 9년간의 계획을 단계별로 작성, 기술하되 1단계 3년간의 내용은 연차별로 제시

### 1. 연구소의 운영 및 발전 계획

- 연구소 소속대학의 전문화 / 특성화 방향
- 연구소의 전문화 / 특성화를 위한 계획
-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등을 포함

### 2. 전임연구인력 확보 및 육성 계획

- 우수인력 확보 방안 및 대우, 향후 활용 계획
- 연구소 육성/발전정책과의 연계성 등과 연계하여 기술

### 3. 교육과 연구의 연계 계획

- 연구소 내 강좌개설(학점인정여부) 또는 대학원 과정 설치 및 운영 계획
-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
- 기타 교육과 연구의 연계 계획

### 4. 대학측의 지원(대응투자, 인력, 시설 확충) 계획

#### 가. 대학측의 대응자금 투자

(금액단위:천원)

구 분		단계별 지원계획					비 고	
		1단계			2단계	3단계		계
		1년차	2년차	3년차				
재단 신청액								
대학측의 지원	대응투자							
	대응투자비율 (대응투자/신청액 %)							
총 계								

※ 대응투자, 과제참여 연구인력, 연구시설, 연구소운영인력 항목은 향후 지원결정시 협약서상 반드시 지켜야 할 이행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검토 후 작성하여 주십시오.

※ '대응투자비율'은 이공계 분야의 경우, 5억원 이내 금액(기자재 등 별도 신청금액 제외)에 대한 비율을 작성하십시오

#### 나. 대학측의 연구소 전임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 지원

구 분		단계별 지원계획 (인원)					비 고	
		1단계			2단계	3단계		계
		1년차	2년차	3년차				
전임연구교수	인원							
	보수수준							
전임연구원	인원							
	보수수준							
계	인원							
	보수수준							

※ '보수수준'은 연봉을 기준으로 작성

※ 동 사업 선정을 통하여 확보, 임용되는 전임연구인력 외 대학측 인력지원에 한하여 작성

다. 연구소 운영인력 지원

구 분		단계별 지원계획					비 고	
		1단계			2단계	3단계		계
		1년차	2년차	3년차				
행정지원인력	인원							
	보수수준							
기타 (기술지원인력)	인원							
	보수수준							
계	인원							
	보수수준							

라. 연구소 시설 확보 계획

용 도	현 재	추가확보 계획	계	비 고
연구소 전용공간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
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
총 계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

※ ‘연구소 전용공간’은 전임연구인력의 연구공간을 제외한 면적을 기입하십시오

※ ‘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’은 전임연구인력에게 별도로 확보된 전용공간임(1인당 1.5평 이상)

5. 기타사항

# 1단계 연구소 성과 목표

## I. 연구소 현황 및 실적

### ■ 연구소 사업 목표

#### 1. 교육과 연구의 연계

- 중점연구소 내에 강좌 및 대학원 학위 과정의 개설 목표
-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목표
- 기타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위한 활동 목표

#### 2. 연구 성과

- 과제 수행 중에 달성 가능한 연구성과 목표  
(전임연구인력 및 연구소 비전임 연구인력으로 나누어 기술)

- ① -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 : SCI 급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수 및 논문 인용도(Impact Factor 등)
-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학분야 : 국제적 수준·전국규모 학술지 게재 논문수 또는 학술저서 및 공인된 국제 작품전 입상 등

#### ② 국제특허 등 관련 기타 주요 관련지표

- ※ 국제적 수준·전국규모 학술지 또는 학술저서, 공인된 국제 작품전 등 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·제출할 경우 '심사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

#### 3. 인력양성 부문

- 중점연구소 소속의 전임연구인력의 확충 및 양성목표

#### 4. 기타사항

## ■ 연구소 사업목표

- ※ 과제 수행 결과 달성할 수 있거나,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목표들을 제시함
- ※ 서식이 주어진 경우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,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목표를 기술함

### 1. 교육과 연구의 연계 부문

(단위: 건수)

항 목	현재	목 표			
		1단계	2단계	3단계(최종)	계
강좌개설(학점인정)					
강좌개설(학점불인정)					
학위과정개설(대학)					
기타 1					
기타 2					
기타 3					
계					

- ※ ‘현재’는 연구소지원사업 신청 당시 실시중인 강좌
- ※ 강좌개설(학점불인정)은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교육 강좌, 교양 강좌 또는 연수 강좌 등을 포함하며 연 6 회 이상의 실시되는 강좌
- ※ 기타에는 그 외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,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기술하고 목표치 기재

각 항목의 구체적 운영 계획 기술

○

-



## 2. 연구 성과

### 1) 연구소 전임연구인력 연구 성과 : 과제참여인력에 한함

항 목	과 제 수 행 목 표			
	1단계	2단계	3단계(최종)	계
① -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 : SCI급 논문수 - 인문·사회 및 예술체육 학 분야 :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 모 학술지게재 논문수(학 술저서 포함)/공인된 국제 작품전 입상 등				편
② SCI급외 논문수				편
③ 국제학술대회발표 논문				편
④ 국내학술대회발표 논문				편
⑤ 국제특허(등록)				건
⑥ 산업체 수주 연구건수/ 금액 및 기타	건 / 천원	건 / 천원	건 / 천원	건 / 천원

※ ①란에는 SCI급 국제학술지/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모 학술지게재 논문수, 학술저서 및 공인된 국제작품전 입상 건수 만을 기재하되, 이와 동등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연구목표는 증빙자료를 첨부·제출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

## 2) 연구소 비 전임연구인력(대학교원) 성과 : 과제참여인력에 한함

항 목	과 제 수 행 목 표			
	1단계	2단계	3단계(최종)	계
① -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 : SCI급 논문수 - 인문·사회 및 예술체육 학 분야 :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 모 학술지 게재 논문수(학 술저서 포함)/공인된 국제 작품전 입상 등				편
② SCI급외 논문수				편
③ 국제학술대회발표 논문				편
④ 국내학술대회발표 논문				편
⑤ 국제특허(등록)				건
⑥ 산업체 수주 연구건수/ 금액 및 기타	건 / 천원	건 / 천원	건 / 천원	건 / 천원

## 3. 인력양성

(단위: 명)

항 목	현재	목 표			
		1단계	2단계	3단계(최종)	계
전임연구인력(재단)					
전임연구인력(대학)					
전임연구인력(기타)					
계					

※ 현재는 연구소지원사업신청 당시 확보된 전임인력 숫자

※ 전임연구인력의 ( )안 표시는 인건비 지급 근거 재원을 의미함 - '기타'는 과기부 등의 정  
부 타 부처의 인력지원 사업에 의한 숫자

확보 및 활용 방안 기술

○

-

#### 4. 기타 주요 목표

※ 그 외, 주요 목표가 있으면 현재 대비 단계별 목표치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해주시요

항 목	현 재	과 제 수 행 목 표			
		1단계	2단계	3단계 (최종)	계

# 1단계 총괄 연구개요

※ 제 1단계 3년간의 연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2매 이내로 작성

## I. 연구소 총괄 연구개요

### 1. 연구요약

\* 연구소 총괄 연구계획의 ‘연구목적 및 배경 / 연구내용, 범위 및 방법 /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’ 등에 관하여 기술하십시오.

### 2. 세부과제별 구성

\* 총괄 주제와 세부과제간 연계성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.

(붙임 4)

※ 과제번호	
--------	--

## 2005년도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제( )세부과제 연구계획서

연구분야	※ 재단 학문분야 분류표상의 소분류 단위			
연구규모	1단계 신청연구비	1차 년도		
		2차 년도		
		3차 년도		
	참여인원	총 참여인원 (연구보조원 제외)		명
		일반 공동연구원		명
전임연구인력		명		
연구보조원		명		
연구과제명	국 문			
	영 문			

### □ 작성요령

- 대상 : 세부과제별로 작성
- 분량 : 세부과제별 연구계획서 20매 이내(연구업적요약문 제외)
- 형식 : 제시된 항목별로 자유롭게 작성
- 규격 : 글자크기 12포인트, 줄간격 160%

※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(Blind Test)로 진행됩니다.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,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.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합니다.

# I. 연구 계획

☞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 또는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.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.

## 1. 연구의 목적

(연구의 필요성, 연구주제의 독창성, 선행연구와의 비교, 연구소 총괄 연구주제와의 연관성 등 포함)

## 2. 연구방법 및 내용

※ 1단계(3년)의 연차별 연구계획을 각각 기술하여 주십시오.

## 3. 결과 활용방안

(연구결과의 학문적·사회적 기여도, 인력양성 방안,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등 기술)

## 4. 기타사항

(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)

## 5. 참고문헌

## II. 연구 수행계획

### 1.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

(1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,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등을 기술)

### 2. 연구수행일정

(1단계 연차별 과제목표와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등을 기술)

< 예시 >

1차 년도 과제 목표		
기 간 (추진년월)	내 용	비 고

※ 2차, 3차 년도 일정도 동일하게 작성

### 3. 연구진 구성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

(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자별 연구수행 계획을 기술)

☞ 향후 연구수행 결과에 따른 책무는 모든 연구참여자 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) 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므로 공동연구원별 실질적인 역할 분담내역 및 연구수행 계획을 기술하여 주십시오. 아울러,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< 예시 >

참여형태 구분	참여자 구분	연구역할분담내용	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	
연구책임자	갑			
공동 연구원	일반 공동	갑		
		을		
		병...		
	연구 전임 인력	갑		
		을		
		병...		

### 4. 연구비 규모

(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타당성 등 기술)

### 5.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학술지

### Ⅲ. 대표업적

신청과제 연구참여 구분	연구책임자 ( ) 공동연구원 ( )	요약문 번호	
※공동연구원인 경우는 갑, 을, 병 등으로 표시			
<b>연구업적 요약문</b>			
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			
업적 구분	저서( )   역서( )   학술지( )   외국특허( )		
업적 참여형태 (논문작성시 참여형태)	책임 또는 단독( ), 공동( )		
연구업적 참여자수	1명( )   2명( )   3명( )   4명( )   5명이상( )		
<input type="checkbox"/> 초록(abstract) 또는 요약문 (특허의 경우 출원일,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)			

- ※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십시오.
- ※ 요약문 번호 명기 방법 (연구업적별 작성)  
 예) 연구책임자: 책임-1, 책임-2.  
 공동연구자: 갑-1, 갑-2 / 을-1, 을-2 / ...
- ※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절대 기재하지 마십시오.



(붙임 5)

# 1999년도 선정 중점연구소 연구성과보고서

## I. 연구활동 성과

### 1. 당초 연구계획 (당초 계획서를 근거로 간략히 기재)

#### 가. 총괄과제 연구개요

총괄 연구과제명	제1단계	
	제2단계	
	제3단계	
<u>연구내용</u> ※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	

#### 나. 세부과제 상호연계성 : 총 3단계 단계별로 작성

제( )단계	제○ 세부과제명	
	제○ 세부과제명	
	제○ 세부과제명	
	⋮	
<u>연구내용</u> ※ ‘연구목적 및 배경 / 연구내용, 범위 및 방법’ 등에 관하여 작성하시고, 단계별 세부과제간 상호연계성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2. 연구활동 실적

☞ 반드시 중점연구소지원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학술회의 개최실적

※ 단계별로 대표적인 학술회의 실적 각 3건 이내 작성

일 시	회의명	장 소	발표 논문수	발표 인원	구 분 (국내/국제)	비 고

### 나. 논문 및 저서 발표 실적

단계	학술지명(논문제목)/저서명	주저자 여부	발행처	게재일자	권 호
1단계					
2단계					
3단계					

※ 학술지인 경우 학술지명을 기재하고 ()안에 논문제목을 기재

※ ‘주저자 여부’란에는 논문작성시 참여형태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참여형태 표기

### 다. 특허 등 객관적 연구성과 실적내용

구 분	내 용	비 고

※ 특허의 경우 출원 실적도 포함.

### 라. 산학연 협동연구 현황 (구체적으로 기재)

### 마. 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및 기타

※ 홈페이지 등록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.

## II. 연구소 기반강화 성과

### 1. 주요 운영 현황

※ 1999년 이후 6년간 운영현황을 기술하되 선정 이전과 현재까지의 발전 및 변화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

○ 연구소 발전의 기반조성 및 일반사항

☞ 연구소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제도개선, 투자 등 대학과 연구소에서 시행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시오

○ 연구소 전문화 및 특성화 추진 현황

### 2. 항목별 성과

#### 가. 연구인력 양성 및 교육 부문

○ 연구와 교육의 연계 : 중점연구소지원 연구와 관련된 강좌개설 현황

##### 1) 강좌운영 현황 개요

구분	지원 이전('98년 이전)	현 재('05년 1/2학기)	비 고
운영강좌 수			
총 학점			
총 수강인원			

##### 2) 강좌운영 실적

- 제 0 단계 ※ 단계별, 강좌별로 작성

참여과제	세부과제명	강좌명	학 기	학 점
제 O 세부과제			년 학기	
강의내용(구체적으로 작성)				

○ 전임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

1) 연구소 인력 현황

- 일반현황

구 분	지원 이전('98년 이전)	현 재	비 고
재단 지원 (과제참여자)			
대학자체 지원 및 기타			
계			

- 과제참여 전임연구인력 현황(현재)

참여과제	성 명 (직위)	주민등록번호	박사학위 수여교	학위명	전 공	임용일자
제 O세부과제		-				

- 과제참여 이외의 연구소 전임인력 현황(현재)

성 명 (직위)	주민등록번호	학위수여교	학위명	전 공	임용일자
	-				

- 과제참여 전임인력 근무조건 및 환경 현황

근무조건	내 용	비 고

※ 급여, 복리후생비, 제권리 등 부설연구소 소속연구원으로서의 대우를 구체적으로 기재

## 2) 인력확보 및 양성 실적

### - 인력확보

단계 구분	재단지원	기타	비 고
1단계			
2단계			
3단계			

### - 박사급연구원 연구참여 이후 진로

단계 구분	참여자명	참여형태	참여기간	참여이후 진로 (직위, 근무처 등)
1단계				
2단계				
3단계				

## 나. 연구소 연구환경 부문

### ○ 연구소 시설(공간), 기자재 등 보유 현황

※ 연구소 시설(공간) 기자재 확보 등의 현황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략히 작성

구 분	지원 이전('98년 이전)	현 재	비 고

### ○ 연구소 업무지원 현황

※ 연구소 행정지원 인력(경리, 서무 등), 사무공간, 경상운영비 등의 현황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략히 작성

구 분	지원 이전('98년 이전)	현 재	비 고

다. 대응투자

(단위 : 천원)

단계 구분	당초 계획금액 (신청시)	확보금액	대응투자 비율 (대응자금/지원금)	비 고
1단계				
2단계				
3단계				